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8 선고 2016가합511479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한국무역보험공사

可 고 1. A

2. B

변론 종결 2016. 9. 30.

판결 선고 2016. 10. 28.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513,611,790원 및 그 중 1,509,311,990원에 대하여 2015. 11.27.부터 2016. 3. 25.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1. 주문 제1항

2.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27.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피고 B은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2015. 9. 14. 접수 제4968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과 연대보증

- 1) 원고는 2014. 3. 28.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위 회사의 중소기업은 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보증원금 1,500,000,000원, 보증기간 2014. 3. 28.부터 2015. 3. 27.까지(이후 2016. 3. 25.까지로 연장)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C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내용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C는 원고에 게 대위변제금 및 원고가 정한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법적절차비용 등을 지급하는 것이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 1) C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를 제공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2015. 9. 18. 당좌부도 발생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 2)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5. 11. 26. 중소기업은행에 1,509,311,999원을 대위변제하고, 권리보전 등을 위한 법적절차비용으로 4,299,800원을지출하였다.

다. 피고 A의 재산처분행위

- 1) 피고 A 및 D은 2009. 5. 1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각 1/2 지분씩을 매수하고, 2009. 5.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2) 피고 A 및 D은 2015. 3. 27.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A의 하나은행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 전부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A, 채권최고액 1,070,4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 3) 피고 B은 2015. 8. 27. 피고 A 및 D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 전부에 관하여 2015. 9. 14. 서울남부지방법원영등포등기소 2015. 9. 14. 접수 제49681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 4) 피고 A은 위 매매예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피고 A이 소유한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은 그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인정근거]피고 A : 자백간주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영등포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한국신용정보원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1,513,611,799원(= 대위변제금1,509,311,999원 + 법적절차비용 4,299,8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1,513,611,790원 및그 중 대위변제금 1,509,311,999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5.11.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 송달 다음일인 2016. 3. 25.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A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고 할 것이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할 때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법리는 하나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 지분이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3. 7. 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채무자인 피고 A이 수익자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전부를 담보로 하는 하나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은 채무자인 피고 A의 소유이고, 다른 1/2 지분은 물상보증인인 D의 소유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아파트 중 채무자인 피고 A 소유 1/2 지분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전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 중 피고 A 소유 1/2 지분에 관하여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위 지분 가액에서 하나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전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라

할 것인데, 을다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한국신용정보원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매매예약 체결 당시 위 지분의 가액이 670,000,000원(= 1,340,000,000원 ÷ 2) 상당인 사실,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892,000,000원 상당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아파트 중 피고 A 소유 1/2 지분에 관하여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피고 A 소유의 1/2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중 피고 A 소유 1/2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예약 또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1/2 지분이 D의 소유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위 지분이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피고A의 책임재산이라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경, 판사 이진용, 판사 한상술

별지목록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제29층 제101-2902호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148.9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1. 24862분의 31.94

(위 현 , 공유,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관할)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표시

1.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2015년 9월 14일

접수 제 49681호 가등기권자